#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48 발의연월일: 2021. 12. 22.

발 의 자:조오섭·강은미·김승남

김원이 · 문진석 · 민형배

송갑석 · 윤영덕 · 윤재갑

이원택 • 이형석 • 조응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측량업 관련 각종 신고민원을 제출하려면 우편이나 방문신청만 가능한 상태여서 측량업의 등록 및 신고 처리에 많은 불편함이 있음.

이에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민원사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05조).

#### 법률 제 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3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05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을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전자적 접수
-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전자적 접수
- 10의3. 제46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전자적 접수

10의4. 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전자적 접수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안 법률 제18384호 공간정보의 구축 | 법률 제183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 ③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 <신 설> 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 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 <u>시·도지사</u>, 대도시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및 -----.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 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 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 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 제 1의2. ~ 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1. ~ 13. (생략)

③ (생략)

 - $  -$	 	 

- 1의2. ~ 9. (현행과 같음)
-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전자적 접수
- 10의2.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전자적접수
- 10의3. 제46조제2항에 따른 측 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전자적 접수
- 10의4. 제48조제1항에 따른 측 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의 전자적 접수
- 11. ~ 1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